

예산총칙

제 1조 서울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2022년도 제1차 추경예산은 일반회계로 한다.

제 2조 추경 세입·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858,330천원으로 한다.

제 3조 1)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
① 사업수입	74,595천원
* 상담·지도사업수입	74,595천원
* 기타사업수입	0천원
② 사업외수입	53,556천원
* 이월금	43,266천원
* 예탁금및예수금	10,000천원
* 잡수입	290천원
* 과년도수입	0천원
③ 보조금수입	730,179천원
* 시비보조금	651,000천원
* 특별사업보조금	79,179천원

2)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인건비	417,098 천원
* 인건비	311,331천원
* 수당	105,767천원
② 물건비	51,680천원
* 일반운영비	42,640천원
* 여비	2,000천원
* 업무추진비	7,040천원
③ 경상이전	83,359천원
* 포상금	3,000천원
* 연금부담금등	80,359천원
④ 자본지출	800천원
* 자산취득비	800천원
⑤ 사업비	275,160천원
* 영역별프로그램사업비	74,721천원
* 특별사업비	121,260천원
* 기타보조금사업비	79,179천원
⑥ 사업외지출	10,000천원
* 예탁금및예수금지출	10,000천원
⑦ 예비비및기타	20,233천원
* 반환금및기타	20233천원

3) 2022년도 사업은 4개 분야, 15개 단위사업
(기정 2022년도 사업은 5개 분야, 30개 단위사업)

○ 따라서 2022년도 전체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.
(수입 858,330천원 / 지출 858,330천원)

제 4조 (명시이월사업) 해당사항 없음

제 5조 (계속비사업) 해당사항 없음

제 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 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7조 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.회계 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단, 동일 항내의 목간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이사(또는 시설의 장)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

제 8조 기타 필요한 사항